

#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시 예상되는 전자금융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김 태 호\*, 박 태 형\*\*, 임 종 인\*\*\*

## 요 약

최근 은행의 소유지분한도와 설립자본금 등에 대한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자금융환경은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입증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전자금융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정보 공격기술 및 수법의 발달로 전자금융보안에 대한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신BIS 리스크 평가에 IT운영리스크가 포함되는 등 금융환경 변화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전자금융리스크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와 함께 서비스채널이 인터넷에 집중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과 차별되는 리스크에 추가적으로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인식 및 대비 부재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권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거나,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금융사고로 이어져 자칫 국내 전자금융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금융환경과는 차이가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져올 전자금융의 기술적 변화는 유사하다는 점에서 해외 주요국가의 인터넷전문은행 현황과 전자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인가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시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에 대해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내 전자금융 환경에서 전통적인 일반은행과 차별되거나 인터넷전문은행 고유의 특성으로 발생하는 주요 전자금융리스크를 다섯 가지로 분석하였고, 이러한 전자금융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는 금융자유화를 진전시켜 금융거래가 자유경쟁원리에 입각해 이루어짐에 따라 국민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바람직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과도한 리스크에 노출 될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역 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야기 시키는 등 여러 가지의 폐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유한 특성으로 수반 되는 리스크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전자금융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리스크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실질적으로 다수의 금융이용자에게 다양한 혜택과 효율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초기 사업계획 심사 단계에서부터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는 전자금융리스크에 대해서, 적절한 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예상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구체적인 인가요건이 마련되지 못한 현 상황에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에 발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 고려대학교 정보경영전문대학원 (taeho@korea.ac.kr)

\*\* 고려대학교 정보경영전문대학원 (mosto2004@korea.ac.kr)

\*\*\* 고려대학교 정보경영전문대학원 (jilim@korea.ac.kr)

## I. 서 론

### 1.1 연구의 배경

최근 점포 없이 인터넷만으로 은행거래를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은행의 소유지분한도와 설립자본금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 움직임과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금산분리)에 대해서도 완화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은 초읽기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동안 은행법 등의 규제에 의하여 은행산업에 진출할 수 없었던 산업자본과 비은행 금융기관이 은행산업에 진출하기 위한 창구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을 적극 모색하게 되리라 예상된다. 또한, 미국 및 유럽, 일본 등 해외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최근 자산규모가 커지고 및 흑자로 전환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정부는 은행 설립자본금 완화와 더불어 온라인 계좌개설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한 법제도 개정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전자금융환경은 전자금융거래의 비서면성, 비대면성이라는 전자적 특성 때문에 파생되는 법적문제의 명확한 규율이 곤란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 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과 이용자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의 입증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써 금융기관의 전자금융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정보공격기술 및 수법의 발달로 해킹, 피싱, 도청, 정보도용 등의 사고가 빈발하는 등 전자금융보안에 대한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신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협약<sup>1)</sup>에 따라 IT운영리스크가 리스크 평가에 포함되는 등 금융환경변화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전자금융리스크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기술적·제도적 금융환경변화와 서비스채널이 인터넷에 집중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과 차별되는 리스크에 추가적으로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인식 및 대비 부재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권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거나,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금융사고로 이어져 자칫 국내 전자금융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연구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며, 해외에서도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대부분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수익부진으로 실패함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전통적인 금융리스크 측면의 경제 이론적 연구 등 일부 분야<sup>2)</sup>에 치중되어 왔다.

### 1.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본 논문에서는 국내 금융환경과는 일부 차이가 있지

[표 1] 기존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비교

분 야	기존 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인터넷 금융거래	인터넷을 보조적 영업채널로 간주 초회 및 이체거래 중심	인터넷을 주 채널로 영업 금융쇼핑 중심으로 해당 은행의 모든 거래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짐
영업 기반지역	지역 점포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적인 기반을 두고 있는 고객 중심	해당국가 전체 또는 전 세계
영업 시간	인터넷뱅킹의 초회, 이체를 제외하고는 영업시간제한	해당은행 모든 업무의 24시간 영업체제
업무 범위	금융과 관련한 대부분 업무를 모두 취급	인터넷전문은행마다 지급결제, 소액대출,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 다양한 특화(Niche Marketing)

1) 기존 BIS협약과 비교하여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화 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자율성 확대와 금융기관이 리스크특성 등에 적합한 방법으로 운영리스크를 측정하여, 이에 상응하는 소비자자본을 신출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효과적으로 운영리스크를 평가·통제하기 위한 관리체계 수립을 권고하고 있다.

2) 수익성, 영업 지속 가능성, 생산성 등

[표 2] 인터넷뱅킹거래 이용현황

(단위 : 천명, 천천, 십억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이용자	23,372	25,108	31,943	35,757
이용건수	544,839	1,086,419	1,125,698	1,382,827
이용금액	3,178,885	4,719,042	6,144,860	8,376,674
이용비율(건수기준)	13.1%	22.5%	19.9%	24.7%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만,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져올 전자금융의 기술적 변화는 유사하다는 점에서 해외 주요국가의 인터넷전문은행 현황과 전자금융부문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인가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시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에 대해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그리고 국내 전자금융환경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시 예상되는 보안 리스크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은행거래를 하는 특성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전자금융리스크를 분석해 보고 안정적인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II. 인터넷전문은행과 국내 전자금융환경

### 2.1 인터넷전문은행 정의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쉽게 표현하면, 점포를 통한 대면거래를 하지 않고 인터넷을 주요한 영업채널로 활용하는 은행을 말한다. 인터넷만을 영업채널로 한다는 의미에서 Internet Only Bank, Online Bank, Pure Play Internet Bank라고도 하며, 인터넷을 주요 채널로 하고 오프라인채널을 보완적으로 이용한다는 의미에서 Internet Primary Bank, Online Primary Bank라고 하는데, 기존 은행이 채널 다각화 차원에서 제공하는 인터넷뱅킹(Internet Banking)과는 구별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지점을 두지 않고 모든 은행거래를 인터넷이나 유무선 전화, ATM/CD, PDA, 우편 등을 통해 사용자 스스로 처리하는(Electronic Self-Service) 것을 강조하는 은행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OCC<sup>3)</sup>에서는 전혀 지점이 없으며 법적으로도 별도의 법인으로 구성된 은행을 순수 인터넷전문은행<sup>4)</sup>(Internet Only Bank 또는 Virtual Bank), 인터넷이 위주이지만 제한된 숫자의 점포나 ATM 등으로 운영되는 은행(limited facility bank), 그리고 웹기반의 인터

넷뱅킹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통적인 은행 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 2.2 국내 전자금융의 발전

전자금융이란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점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금융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전자금융은 일반 금융업무와 구별되는 새로운 별개의 업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해당 금융 업무를 제공할 때 그 전달경로(delivery channel)로써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금융거래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기관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로 정의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는 기본적으로 비서면, 비대면 거래의 특성을 가지며,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이 없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금융거래의 본질적인 특성인 정확성, 확정성, 책임회피금지 등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컴퓨터를 통해 내·외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만큼 효율과 편의성은 증가하지만, 광범위한 전달경로로 인해 외부 및 내부의 위협에 근본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자금융은 거래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사이버 증권거래(brokerage)에서 제일 먼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은행부문이 자금이체 업무를 중심으로 인터넷뱅킹거래가 그 뒤를 이으면서, 점차 복

3) the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미국통화감독청)

4) 미국의 e\*Trade, Net Bank, 영국의 Egg Bank, First-e Bank, 일본의 Japan Net Bank, Sony Bank, e-Bank 등이 순수 인터넷전문은행에 해당한다.

〔표 3〕 온라인증권거래 이용현황

(단위 : 십억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이용금액	3,585,616	4,152,590	4,817,750	5,809,270
이용비율 (대금기준)	57.5%	59.5%	61.2%	60.9%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표 4〕 온라인보험거래 이용현황

(단위 : 천억, 억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이용건수	365	218	162	255
이용금액	1,321	750	514	421
이용비율 (건수기준)	0.70%	0.36%	0.22%	0.36%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잡한 거래성격을 갖는 사이버 보험거래에까지 확산 발전되고 있다.

#### ① 인터넷뱅킹 거래

인터넷뱅킹거래는 1999년 하반기부터 개별 은행의 홈페이지나 한국통신이 운영하는 벅크타운을 경유하여 제공되기 시작하였으며, 단기간에 등록고객 및 이용실적이 급증하였다. 국내 시중은행의 경우 인터넷뱅킹 비중이 2007년말 현재 24.7%(건수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CD/ATM, 텔레뱅킹과 더불어 은행의 주요 서비스 전달 채널로 자리 잡았으며, 그 비중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② 사이버 증권거래

1997년 증권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허용된 온라인 증권거래는 1999년 주식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본격적으로 성장을 시작하여 2000년부터 주된 증권거래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현재는 대부분의 증권사가 온라인 증권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전문증권사’는 인가기준상 별도로 구별되는 개념이 아니며, 증권업협회 분류기준에 따라 온라인 주식거래비중이 90%를 초과하는 증권사를 지칭하는 것이며, 현재 3개 온라인 전문증권사 가운데 위탁매매 전업으로 허가를 받은 증권사는 갯머증권중개 뿐이며, 그 외 키움닷컴과 이트레이드증권은 종합증권사로 설립되었다. 온라인증권거래의 비중은 그 동안 급격히 증가하여 이미 50%를 초과함에 따라 최근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온라

인증권거래는 증권사의 서비스채널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온라인 전문증권사의 출현으로 거래수수료 뿐 아니라, 이용편의성, 시스템안정성, 거래처리속도 등의 강점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시장점유율을 증대 시켰다.

#### ③ 사이버 보험거래

보험은 상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특성으로 인해 그동안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은 극히 저조하였으나, 최근 보험 사이버몰과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표준화된 인터넷상품이 등장함에 따라 향후,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01년부터 상대적으로 표준화하기 쉬운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교보자동차보험(2001.10), 교원나라자동차보험(2003.11), 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2003.12) 등 인터넷 자동차보험 전문 보험사가 설립되었다.

상기와 같이 인터넷뱅킹거래와 온라인전문증권사의 출현으로 거래수수료의 인하와 온라인 거래요소의 강점에 힘입어 성공적인 시장점유율을 증대시킨 것처럼 인터넷전문은행도 국내 고객의 인터넷전문금융회사에 대한 낮은 거부감 등에 힘입어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된다.

### 2.3 국내 전자금융환경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국내 인터넷사용자는 초고속통신망의 발달로 1990년

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7년 말 현재 약 3천 4백만명<sup>5)</sup>으로 국내 인구의 76%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전자금융가입자 수도 7천 8백만<sup>6)</sup>(중복가입자 포함, 금융감독원)에 이르러 이미 인터넷금융거래가 확산 및 성숙되어 왔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은행공동망은 모든 은행을 하나의 네트워크에 통합한 시스템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이러한 공동망에 가입한다면, 자금이체와 자동화기기 사용 등 모든 은행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우수한 전자금융 인프라를 갖출 수 있게 된다. 또한, 인터넷에 익숙한 사용자들이 굳이 혼잡한 은행창구에 방문하지 않고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이용하여 스스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고, 모바일뱅킹, TV뱅킹 등 새로운 기술의 금융서비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국내 금융이용자 경향은 상당히 우호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국내에 설립된다면 다양한 금융이용자의 성향과 니즈에 따른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온라인상에서 편리한 금융서비스 개발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이 기존 은행과 가장 차별화 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기존은행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금융서비스가 개선되고, 금융이용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의 제공과 수수료 인하압력이 발생하는 등 금융소비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영업점을 보유하지 않으므로써 절감된 운영비용을 활용하여 기존 은행들에 비해 고객들에게 더 높은 금리와 저렴한 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수수료인하 가격경쟁은 그동안 국내 온라인 증권사와 온라인 자동차보험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결국, 저비용구조와 유연성을 갖춘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이 기존은행의 구조조정을 촉발하게 될 것이고, 현재 유사 대금결제업무(전자화폐, 휴대폰 등 통신기기) 등 비금융권의 전자금융업무를 제도권에서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순기능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기존 은행권이 소액예금자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점차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거래건당 처리비용이 매우 저렴하므로 학생, 저소득층 등 예금액이 작은 계층에 대해서도 차별 없는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환경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시 고려되

어야 할 사항은 국내뿐 아니라 미국 등 해외 주요 금융 선진국에서도 기존 오프라인 채널의 중요성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는 점이다. 그리고 오프라인 시설이 부족한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을 위해서는 금융공동망의 참가가 필수적이나 기존 참가기관인 은행으로부터 일방적 혜택을 받기만 한다는 반대에 부딪칠 소지가 높다.

## 2.4 전자금융의 발전과 전자금융리스크

전자금융리스크(Electronic-Finance Risk)란 전자금융거래를 수반하는 금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리스크로서 금융의 본질적 성격에서 발생하는 운영리스크에 부가적인 특성을 갖는 리스크로 정의된다. 최근 전자금융의 발전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에게는 전통적인 금융업무의 주된 리스크인 신용·시장리스크 이외의 새로운 리스크로 전자금융리스크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금융으로 인한 위험은 오프라인의 전통적 금융활동과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해킹 등에 따른 보안리스크, 거래리스크, 평판리스크, 전략리스크, 법규준수리스크 등은 전통적인 금융 업무에 비하여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전자금융은 비대면성, 실시간거래 등의 특징으로 인하여 분쟁의 소지가 커지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전자금융리스크는 전자적 전송으로 인한 금융거래 속도의 증가 및 외부인의 접속 가능으로 인한 리스크, 외부 시스템 지원자에 대한 기술적인 의존과 법적환경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리스크가 발생된다. 또한, 다른 리스크보다 상호연관성이 강해서 개별시스템의 작동정지나 시스템오류가 연결된 타 금융기관시스템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켜 그 영향은 이해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금융부문 전체로 급속히 확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자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 유지를 위해, 발생 가능한 사건에 대한 인식과 대응책 등 포괄적인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

다음은 국제결제은행(BIS :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의 전자금융리스크 관리 준칙의 주요 내용이다.

[표 5]에서 살펴본 14개 항목의 BIS 전자금융리스크

5) 한국인터넷진흥원(2007년말)

6) 금융감독원(2007년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텔레뱅킹 중복가입자 포함)

[표 5] BIS 전자금융리스크 관리 준칙 주요 내용

분 야	주요 내용
이사회 및 경영진의 감시 (Board and Management Oversigh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와 고위경영진에 의한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리스크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감시체계 확립. 명확한 책임부여(accountability), 정책 및 통제절차 포함</li> <li>- 이사회와 고위경영진은 은행의 보안통제절차 중 중요사안 검토 승인</li> <li>- 이사회와 고위경영진은 전자금융을 지원하는 제3자에 대한 의존도 및 아웃소싱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심사 및 감독절차를 마련해야 함</li> </ul>
보안통제 (Security Contr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고객의 신분 및 권한부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li> <li>- 은행은 거래부인방지(non-repudiation) 및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거래에 대한 정당성 확인수단(transaction authentication methods)을 사용해야 함</li> <li>- 은행은 전자금융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응용프로그램 하에서 직무책임이 명확히 분리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li> <li>- 은행은 전자금융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및 응용프로그램에 대해 적절한 승인통제 및 접근권한을 마련해야 함</li> <li>- 은행은 전자금융거래, 기록, 정보에 관한 데이터의 무결성(integrity)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li> <li>- 은행은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대해 명확한 감사증적(audit trails)을 남겨야 함</li> <li>- 은행은 핵심적인 전자금융정보에 관한 비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비밀유지를 위한 대책은 데이터베이스에 송신되거나 저장되는 정보의 비밀정도에 상응해야 함</li> </ul>
법적 및 평판리스크 관리 (Legal and Reputational Risk Manag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은 자신의 웹사이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잠재고객이 전자금융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은행의 정체성(identity)과 규제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함</li> <li>- 은행은 전자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에서 제공되는 고객의 프라이버시 보호요건을 충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 강구</li> <li>- 은행은 전자금융시스템 및 서비스의 가용성(availability)을 보장할 수 있도록 거래 처리용량, 업무의 연속성 및 비상계획 등에 관해 효과적인 계획수립절차를 확립해야 함</li> <li>- 은행은 내·외부로부터의 보안침해 등 전자금융시스템 및 서비스를 방해할 수도 있는 사건에 대한 문제를 관리, 억제, 최소화할 수 있는 장애대비계획을 수립해야 함</li> </ul>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관리준칙 중에서 특히, 평판리스크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는 전자금융의 특성상 금융회사의 평판에 관계된 정보가 보다 신속히 파급되어 일단 자금인출 등의 사태가 발생하면 오프라인에 비하여 통제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전자금융의 안전성에 대한 고객의 신뢰가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현재의 여건을 고려할 때, 특정 금융회사에 전자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자금융거래 전반에 대한 고객의 신뢰가 저하되는 외부효과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자금융과 관련된 금융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 고객비밀보장과 관련된 법규의 준수가 중요하다. 이는 전자금융거래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움에 따라 자금 세탁 등의 목적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고, 전자금융의 발전으로 금융회사가 축적된 고객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전자금융거래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다양한 리스크관리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금융회사별

로 규모, 업무복잡성 및 리스크 관리 문화가 다르므로 획일적인 리스크관리 보다는 개별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전자금융리스크는 모든 업무가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전문은행에 있어서 그 중요성의 의미가 더욱 커진다.

### III.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현황 및 전자금융 인가의 기본방향

#### 3.1 미국

1995년 10월 미국에서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인 SFNB (Security First Network Bank)가 설립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은행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이후 30개 내외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되었으나 상당수가 고객유치 실패로 인한 영업부진 등으로 퇴출당하면서 현재는 약 10여개의 은행만이 영업 중에 있다. 현재 남아있는 인터넷

(표 6) 미국 인터넷 전문은행 운영 현황

(단위 : 백만달러, 2004년 말 기준)

은행명	총자산	대출	예금	순이익
ING Direct	36,024	10,426	28,801	157.1
Etrade Bank	25,549	11,833	12,426	219.4
NetBank	4,622	3,312	2,639	4.2
GMAC Bank	3,867	3,668	1,710	90.8
Lydian Private Bank	1,370	1,282	907	7.6
Principal Bank	1,218	1,124	1,076	-3.3
Nexity Bank	610	388	458	5.9
The Bancorp Bank	575	428	401	3.9
Bank of Internet USA	512	420	324	3.1
American Bank	492	245	346	3.4
Bridge Bank	402	295	355	3.2
Ebank	108	87	71	0.1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전문은행들은 여수신업무를 비롯하여 보험 상품판매, 주식거래 중개 등 기존 은행과 유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설립 초기에 비하여 고객 인지도가 높아지고 경영여건이 호전되어 대부분 흑자로 전환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주체는 온라인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 비 금융업체 등으로 다양하다.

미국의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징은 직접 입출금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기존 은행의 계좌와 연계를 통한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대 마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새로운 수익모델을 개발하여 특화된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 특히, ING Direct의 경우 고금리 예금, 각종 수수료 미부과,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에 중점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다. Netbank는 여신기능을 포함한 대부분의 은행 업무를 아웃소싱 하여 비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주택담보대출에 집중하여 40대 중반의 주택을 소유한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고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하여 자동차구입자금 대출, 신용카드 대출, 보험 상품판매, 공과금 수납, 신용카드 발급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98년 은행업과 증권업의 겸업을 금지하는 Glass-Steagall 법이 폐지되면서 금융업종간 상호 진출이 허용되었다. 이로 인해 보험회사(ING), 증권사(Etrade) 등의 비은행권과 비금융기업(GM)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받았으며, 금융규제 완화에 따라 NetBank와 같은 저축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전자금융리스크 관리체계는 FDIC(연방예금보통회사)가 전자금융의 급속한 발전과 도입에 따른 안전성과 건전성 하락 가능성을 인식하고, 민간주도의 개발과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의 도입을 최소화 하면서 전자금융의 안전성 및 건전성 기준을 마련하였다. 특히, 주로 소매 전자금융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획관리, 내부통제, 정책 및 절차 관련 행정적 기준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전자금융을 용도별 3단계<sup>7)</sup>로 분류하여 기준을 차등 적용하였다. 특히, 9.11 테러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 재난 발생시 금융시스템을 신속히 복구하고 업무의 지속성(Business continuity)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 통화감독청(OCC),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공동으로 백서<sup>8)</sup>를 작성하여 금융기관 들이 지켜야 할 건전 관행<sup>9)</sup>들을 제시하였다.

- 7) 1단계(Level I) : 일상(non-sensitive) 정보의 일방적 전달 (웹 사이트에 은행상품 서비스 관련 공개정보 게시)  
2단계(Level II) : 중요(sensitive) 정보의 공유와 상호 교신 (웹상에서 은행 대출의 신청 및 계좌 개설)  
3단계(Level III) : 보안과 안전이 보장되는 전자금융거래 및 결제제도 (웹상에서의 은행잔고 조회, 입출금, 계좌이체 등 자금거래 서비스)
- 8) "Interagency Paper on Sound Practices to Strengthen the Resilience of the U.S. Financial System"(2003. 4)
- 9) 주요 금융기관의 업무재개 시간 목표(업무재개 2시간, 1일 이내 복구), 별도의 백업시설 유지 및 인력 보유, 복구시설의 일상적 사용 및 점검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을 위해서 별도의 특별법은 제정되지 않았으나, 인가 심사과정에서 유동성 관리나 전산보안 등 인터넷 전문은행의 특성을 고려한 심사기준을 인가지침<sup>10)</sup>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리스크 중심의 감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안전성·유동성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지는 고유의 이슈에 대한 대책에 관해 보다 강력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인가 조건으로는 위험의 분산, 자금조달, 유동성 유지 및 자기자본 수준 등이 있다. 전자금융 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인터넷뱅킹의 안전성에 대한 제3자로부터의 독립적인 검토보고서 제출과 금융이용 고객의 보호를 위해 최소한한 개 이상의 물리적 실체의(physical) 점포를 유지토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초기에 세웠던 영업 전략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차선의 영업 전략을 수립토록 의무화 하고 있다.

또한, 아웃소싱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영업 전략에 부합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아웃소싱업체는 ‘은행서비스법’에 의해 감독당국의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등 세부적인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토록 하기 위해 경영진은 장애나 재해발생시 다른 장소에 업무를 이전할 수 있도록 백업시스템이 갖추어진 업무복구계획(business resumption plans)을 마련하여야 하며, 복구계획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매년 외부독립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3.2 일본

일본의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과 콜센터를 이용하여 기존 은행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교적 낮은 수수료와 높은 금리, 고객 서비스 확대 등 기존 은행과 차별화에 노력하고 있다. 주요한 인터넷전문은행은 Japan-net bank, Seven bank(舊IY뱅크), Sony bank, E-bank 등이 영업을 하고 있다. Seven Bank는 ‘세븐일레븐’이라는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일본 최대의 유통기업인 이토요카도에 의해 2001년 5월 설립되었고, 세븐일레븐 지점에 ATM을 설치하여 지급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중심으로 사업전략을 펼치고 있다. Sony bank 또한 비금융회사인 소니사가 지분의 80%를 소유하고 있다.

일본의 금융감독청(FSA)은 새로운 형태의 은행업에 대한 인가·감독지침<sup>11)</sup>을 마련하여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 하였다. 금융규제 완화로 비금융기관(산업자본)이 20%이상의 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 은행업에 자회사의 형태로 진출함에 따라, 자회사인 은행과 모회사와의 관계 규정에서 비금융기관(산업자본)의 신용도 및 자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자은행이 사업 모회사로부터 독립성 확보, 모회사와의 사업리스크 차단, 고객정보 보호, 자산 구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 등의 은행업무 전진성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이 모회사와 고객정보를 상호

(표 7) 일본 인터넷 전문은행의 주요사업 현황

회사명	주요 사업	특 징
Japan-net 은행	- 타 금융기관과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제공 서비스(보험, 증권 등) 확대 - 개인 예금, 대출, 자금결제, 카드론 등 제공	- 휴대전화 이용자, 일본생명 계약자 등 - 휴대전화를 이용한 정기예금
세븐은행 (舊IY뱅크)	- 공공요금수납, 보험료지불 등 자금결제업무 (세븐일레븐 점포를 중심으로 ATM 설치운영) - 개인 소액무담보론 등 제공	- 만개 이상의 점포망 - ATM이용에 의한 제휴은행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가 주요 수익원
Sony은행	- 개인 예금, 투신, 주택 모기지론, 고객 자산운용 및 관리서비스 등 제공 - 출자처인 마넥스증권과 연계 - 사쿠라은행, 우체국 ATM 이용	- 소니가전과 음악소프트의 net판매결제 - JP모건의 부유층 자금운용노하우 활용
e-bank	- 전자상거래 관련 소액결제전문은행으로 결제에 휴대전화도 활용 - 예금업무, 소액용자업무	- 보통예금이용한도 50만엔, 1회 결제상한 50만엔 - 전화화폐를 차세대휴대전화에 탑재 슈퍼마켓과 자동 판매기에서 결제가능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10) The Internet and National Bank Charter(OCC, 2001)

11) 타업종에 의한 은행업 진입 등 새로운 형태의 은행업(인터넷은행 등)에 대한 인가 및 감독지침(FSA, '00. 6월)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범위·이용목적·이용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사전에 고객 본인으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대책이 충분히 강구되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또한, 영업개시 이후에도 개인정보보호대책의 확실한 이행여부를 은행에 대한 검사 내지 보고장구 등으로 점검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 정보기술(IT) 관련 규제나 감독을 인터넷전문은행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에 맞추어 재검토하여 실효성이 있는 보호대책을 마련토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인가 심사시 고객 불만처리·상답방법, 시스템 다운시 대응 방법, 법규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고객 설명의무 이행방법, 돈세탁방지 관점에서 본인 확인의무 이행방법 등과 충분한 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여부, 시스템의 안전관리 체제(외부 위탁업체 관리 포함), 장애 발생시 비상 대응체제 강구여부(외부전문기관의 평가서류 제출 요구)를 심사하고 있으며, 인가 심사시에 확인한 대책의 이행 상황을 검사 또는 보고서 장구 등으로 점검하고 있다.

최근 일본 금융감독청(FSA)은 “주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감독지침” (2008. 3)을 마련하여 시스템 리스크, ATM 시스템 보안, 금융기관 간 시스템·네트워크의 이용, 시스템 통합 리스크, 프로젝트 관리 등 금융기관 IT 시스템에 대한 감독방안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 3.3 싱가포르 및 홍콩

싱가포르 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는 회사는 크게 은행의 자회사, 인터넷전문은행(IOBs - Internet-only Banks) 및 해외에 기반을 둔 회사의 싱가포르 지점(Branches)설립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기존 은행의 자회사는 모회사에서 통제가 가능하므로 자본금 설립요건<sup>12)</sup>이 미약하나, IOBs 및 Branches의 경우는 기존 은행업 설립요건 및 싱가포르 내 은행업 진입요건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어서, 납입자본금 및 자본적정성 등 높은 진입장벽으로 새로운 회사의 영업진출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즉, 기존 은행의 자회사 형태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유도 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시 전자금융리스크 측면에서는 보안 및 기술 리스크의 관리와 고객요구를 충족할 적정 절차 등 전전한 리스크관리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홍콩의 경우는 좀 더 엄격하여 기존의 인가정책과 일치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의 인

가은행의 전환에 의하지 않고서는 새로 설립될 수 없도록 하였다. 즉, 기존 은행이나 적어도 10년 이상 예금수령은행<sup>13)</sup>만이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전환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러한 엄격한 인가기준의 적용으로 홍콩에는 아직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되지 못했다.

### 3.4 시사점

과거 해의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수익부진으로 상당수가 퇴출되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술경험과 규모의 효과를 축적하여, 최근 자산규모가 커지고 흑자로 전환되면서 정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1997년 금융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비금융기관이 20%이상 은행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완화로 산업자본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은행산업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눈 여겨 봐야 한다. 이것은 국내 금융환경과 유사하게 금산분리 및 은행소유 지분 완화에 따른 조치로 산업자본이 금융업으로 활발하게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사업자본 유입에 따른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감독정책은 우리에게 좋은 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 그리고 해의 주요 국가들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기존의 금융리스크 중에서 유동성리스크, 전략리스크, 평판 및 운영리스크와 고객보호를 위한 대책을 일반은행에 비해 다소 차별화 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토록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국·일본 등 해외국가와 국내 금융환경과는 차이가 있으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가져올 전자금융의 기술적 변화는 유사하다는 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성에 따른 해의 국가의 인가지침은 우리에게 좋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12) 은행의 자회사 : 1억 \$ (모은행 15억 \$), IOBs : 15억 \$, Branches : 2억 \$ (단위 : 싱가포르 달러)

13) 홍콩은 은행의 영업범위에 따라 인가은행(licensed bank), 제한인가은행(restricted licensed bank), 예금수취회사(deposit taking company) 3가지 유형의 은행이 있으며, 제한인가은행과 예금수취회사는 요구불예금과 소액예금(각각 50만, 10만 홍콩달러 이하)을 수취할 수 없고 인가은행이 되려면 10년 이상 제한인가은행 혹은 예금수취회사이 있어야 함

#### IV.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전자금융리스크 분석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으로 발생하는 전자금융리스크는 기본적으로 기존 온·오프라인 겸영은행의 전자금융리스크와 유사하나, 기존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 차별되거나, 인터넷전문은행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특성으로 발생하는 전자금융리스크를 다루고자 한다.

##### 4.1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계좌 개설 허용시 예상되는 보안 및 법규리스크

해외의 주요국가에서는 계좌개설시 반드시 대면확인을 통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은 없다. 신규로 계좌 개설<sup>14)</sup> 시 즉시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인터넷전문은행 스스로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실질적 심사를 거쳐, 신청인 본인을 확인하는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메일 등을 통한 온라인상에서 계좌 개설은 약 4~5일(영업일 기준)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계좌개설시 실명확인을 해야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sup>15)</sup>”(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온라인계좌개설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전국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점을 감안 할 때, 실명확인방법 해결은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금융실명법이 엄격히 적용된다면 인터넷전문은행 본점을 제외하고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나,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실명확인대행계약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실명 확인에 도움을 주어서 계좌 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오프라인 기관이 많지 않다는 데 있다. 온라인전문증권사의 예에서 보듯이 현재의 은행 창구는 이 업무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하지만 은행이 자신의 경쟁 기관인 인터넷전문은행의 계좌개설을 도와주리라고는 기대하기 힘들다. 결국,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되고 활성화를 통하여 소액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상에서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선결되어야 하고, 그 방법으로 현행 공인인증서가 실명확인 수단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법제도 개정 등이 고려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공인인증서의 이용은 인증서 자체의 보

안 취약점 보다는 보관 또는 관리상의 취약점으로 인해 이미 복제와 도용 등 전자금융사고가 발생<sup>16)</sup>되었으며, 해킹기술의 발달로 대형화·지능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의 공인인증서는 무한히 복제가 가능한 정보에 불과하며, 진정한 디지털시대의 전자인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면확인을 충분히 대체할 만한 안전한 기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금융실명법의 기본 취지인 금융거래의 진전성, 투명성, 자금세탁방지 등이 훼손 되는 것에 대한 법적 해결방향도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온라인상으로 손쉽게 계좌개설을 통해 범죄나 자금세탁에 이용할 경우 통장 개설자와 실제 이용자가 달라 추적이 어려워, 특히 사이버 범죄에 자주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통장’ 개설자에 대해서는 처벌근거 조차 없는 실정이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을 위해 금융기관 종사자에게만 보호의무와 위반시 처벌을 부과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이 선결되지 않고 현행 체계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계좌개설이 허용될 경우, 오히려 전자금융사고의 빈발과 이용자의 신뢰 부족으로 전자금융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14) 미국·일본 등 주요국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계좌개설시 금융기관의 책임하에 본인 확인심사를 수행하며, 반드시 대면에 의한 실명확인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음

\* 미국의 일반적 계좌개설 절차

① 고객이 온라인 상에서 지원양식에 필요사항 기입 (Social Security Number, Federal Tax ID, Mail Address, Driver's licence 등)

② 완성된 양식을 인쇄하여 서면으로 서명한 후, 우편으로 은행에 송부

③ 은행이 서명된 기입된 양식을 받아 심사후 계좌 개설  
15)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1997. 12. 31, 법률 제5493호).

16) ① 중국 해커로 추정되는 해커들이 국내 특정 웹사이트를 해킹하여 동 사이트에 접속한 고객의 PC에 저장된 약 5,000여명의 공인인증서 절취(2007. 1)

② 한국의 유명 웹사이트인 xxx.com 전자우편함을 해킹하여 메일에 첨부 파일로 보관하고 있던 공인인증서를 복사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사이버머니 절취(2007. 1)

③ 개인 PC를 해킹하여 공인인증서 절취하여 예금 부당인출(2005. 5)

#### 4.2 산업자본 유입에 따른 이(異)업종간 편법적 고객정보 이용 등 리스크

1990년대 후반 일본에서는 현재의 국내 금융환경과 유사하게 금융규제의 완화로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산업자본의 은행업진출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FSA)는 산업자본 등 이업종에 의한 은행업 진입에 대한 대책으로 모회사로부터 자은행의 독립성 및 사업리스크 차단에 중점을 두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과 모회사간에 고객정보를 상호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범위·이용목적·이용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사전에 고객 본인으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얻도록 하고, 이후에도 개인정보보호대책의 확실한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고객정보보호에 대하여 철저히 대비하였다. 이것은 동종업종에서 보다는 이(異)업종간에 시너지를 높이려는 과정에서 공유하고 있는 고객정보를 편법적으로 마케팅 등에 이용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기업의 고객정보 유출과 편법적 이용이 논란이 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고객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은 은행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산업자본의 유입 요인이 커지면서 설립주체가 제2금융권, 통신 및 유통업체 등 대부분 비은행권의 자회사 형태로 설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 산업자본의 유입요인이 커지는 이유는 그룹 계열사들간에 유통되는 자금에 대해서만 자체적으로 지급결제를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수수료 절감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주요 대주주인 비금융기업의 고객정보를 자회사인 인터넷전문은행이 교차판매(cross selling) 및 마케팅자료로 이용하게 될 경우,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으며, 모기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도모하기 위해 은행의 고객정보를 임의로 활용할 위험성도 높은 것이다.

그리고 금융규제 완화로 은행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이 난립하게 될 경우, 전문인력 부족과 설립주체가 되는 모기업의 영향으로 인터넷전문은행 경영진과 직원 등의 구성인력이 은행업 경험부족으로 많은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다. 국내 금융환경과는 차이가 있으나, 홍콩에서는 이러한 경험부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기존 인가은행 또는 10년 이상 예금 수취기관만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싱가포르에서는 은행의 자회사 형태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토록 유도하여, 은행 운영에 대한 노하우(Know-how)로 리스크를 줄이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은행업 경험부족에 따른 전문성 약화와 역량부족은 각종 전자금융사고와 관리능력 부재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볼 때 금융시장에서 심각한 신뢰성의 상실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

#### 4.3 인터넷 채널에 대한 높은 업무의존성과 IT기술변화 리스크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을 통해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하고 24시간 영업 체제를 유지함에 따라 IT부문에 대한 사업의존도가 절대적이며, 전통적인 은행보다 높은 차원의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인터넷 및 온라인서비스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신속한 의사결정 및 발빠른 시장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 발생하는 높은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사례<sup>17)</sup>를 통해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지급결제, 소액대출,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 인터넷전문은행마다 다양한 특화된 전략에 따른 고객서비스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이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적절한 시스템의 규모 및 종류 선택, 향후 기술방향에 대한 예측 등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 된다. 은행산업은 막대한 정보기술(IT) 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이며, 인터넷전문은행의 특화전략에 따른 선행투자는 상당한 위험부담과 미래 기술 발전 방향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기존 은행은 온·오프라인의 여러 채널을 보유하고 있어서, 온라인 채널의 장애에도 지점이나 서면 기록 등을 통해 영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인터넷전문은행은 모든 업무가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되므로 웹서버 또는 인터넷뱅킹서버 장애, 인터넷망 장애 등 일부 시스템 장애나 외부 장애 요인 발생에도 전체업무가 마비되어 업무지속이 어려운 리스크가 발생된다. 재

17) 미국 Netbank는 담보대출, ING Direct는 인터넷 및 전화위주의 저축·투자상품, 영국 Eggbank는 소비자금융 특화로 신용카드, 일본의 Seven bank는 예금지급 등으로 전략적으로 특화하여 서비스 제공

해복구센터로의 전환을 고려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주 센터에 재해 또는 장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DRS (재해복구시스템)를 통한 서비스 재개 판단은 무척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까지 재해복구서비스를 동작 하여 서비스를 재개한 국내 은행의 사례는 거의 전무하다. 그러므로 인터넷전문은행은 시스템장애에 대비하여 기존 은행보다 철저한 대비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OCC)에서는 장애 또는 재해 발생에 대한 업무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터넷전문은행 경영진이 서비스제공기관(vendor)과 연계하여 재해 또는 장애발생시 백업시스템이 갖추어진 복구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복구계획은 문서로 작성되어 이사회 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매년 외부 독립기관의 검증을 하는 등 경영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FSA)의 경우에도 시스템 보안 및 안정성에 대해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하고, 위기관리체계 등이 적절히 강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전문은행은 서비스채널이 인터넷에 집중됨에 따라 전통적인 온·오프라인 겸영은행과 차별되는 리스크에 추가적으로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

#### 4.4 이용자 및 의사소통채널 부재에 따른 고객보호의 어려움

미국(OCC)에서는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점포 없이 가상점포만으로 운영되는 인터넷전문은행과 고객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최소한 한 개 이상의 물리적 실체(physical)의 점포를 유지토록 의무화 하고 있다. 또한, 일본(FSA)에서는 인가 심사시 무점포영업이라 하더라도 고객보호와 관련하여 고객의 고충·상담과 시스템다운 등에 수반되는 고객대응, 법령에 근거한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의 이행, 공시의 이행 등의 관점에서 대응태세가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사고는 인터넷의 특성상, 대면거래보다 그 발생이 용이하고 더 위험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된 전자금융사고를 볼 때에도 인터넷의 익명성, 낮은 수준의 보안능력 때문에 이용자들이 사고에 노출되고 있으며, 일반 금융거래보다 사고원인 규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보 및 사법적 처리능력도 부족하여 사고 해결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점의 실체가 없이 가상점포로만 운영되거나, 특히 기반시설이 해

외에서 아웃소싱 하여 운영될 경우, 금융이용자의 불편 사항이나 문의사항에 대하여 이메일이나 전자게시판 등 온라인채널 이외의 의사소통 창구가 없어 효과적인 고객 보호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 될 수 있다.

#### 4.5 비용 최소화 전략에 따른 아웃소싱 리스크

인터넷전문은행은 초기부터 다수 고객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공격적 마케팅과 전략적 제휴, 철저한 아웃소싱을 통해 비용절감을 추구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NetBank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로, 본사는 기획과 콜센터만을 직접 관장하고 데이터관리, 네트워크관리, 대출심사 등 대부분의 업무를 아웃소싱 하여 비용 최소화 전략<sup>18)</sup>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NetBank가 후발 인터넷 전문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타 선발 인터넷 전문은행과는 달리 짧은 기간에 흑자를 기록하였다고 해석<sup>19)</sup>하고 있다. 아웃소싱의 활용이 일반화 되는 추세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전략도 이와 크게 상황이 다르지 않을 것<sup>20)</sup>으로 보인다. 비용절감을 통해 고객에게 높은 금리제공과 저렴한 수수료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아웃소싱 선택은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핵심 업무기능을 외부에 맡김에 따라 외부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커지고,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의 유출 가능성과 IT부문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휴업체로 인한 서비스 중단 우려와 기술 종속성 심화 등 잠재적인 리스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8) NetBank는 여신기능 조차도 외부회사인 First Mortgage Network에 맡기고 있다. 모든 여신기능을 외부에 맡김으로써 다른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인터넷 겸영은행보다 빨리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요인으로 해석되고 있다.

19) 유국렬, “인터넷진입과 생산비용”, 한국재무학회, 재무연구 제15권 제2호, 2002

20) 기존 금융기관들도 아웃소싱이 단순히 위험회피와 비용절감의 차원을 넘어서 전략적 목적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임

\* 국내 IT아웃소싱 시장전망 추이

구분	금융	통신	제조	공공	유통·물류	교육
2006~2010년 아웃소싱 성장률	9.4%	8.0%	8.2%	9.1%	7.9%	7.8%

### V.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전자금융리스크 대응 방안

첫 번째로, 온라인계좌개설과 관련하여 공인인증서가 온라인상에서 안전하게 이용되어 계좌개설에 사용될 수 있다면, 기존 은행·증권사에서도 실명확인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창구거래의 온라인화를 촉진하여 금융기관의 상당한 수익 제고가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한 기술적 해결방안으로 보안토큰 기반의 공인인증서<sup>21)</sup> 사용이 제시될 수 있다. 현행 공인인증서의 보관 및 관리상 복제가 되는 취약점을 보완하고, 사용자 본인을 인증하기 위한 하드웨어 매체(What you have)를 이용하는 방안이다. 보안토큰기반의 공인인증서는 국내에서 표준화 및 적합성 인증체계<sup>22)</sup>가 이미 갖추어져 있어 쉽게 적용이 가능하며, 사용편의성이 높은 장점이 있고 보안토큰에 소요되는 비용도 현행 실명확인 대행 위탁 수수료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안토큰의 발급이 가능하다. 인터넷전문은행 입장에서는 손쉬운 고객확보와 직접적인 비용을 고려할 때, 보안토큰의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를 이용하는 금융이용자도 무상으로 발급되며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 보안토큰 기반의 공인인증서 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계좌개설을 위해 본인 확인을 하는 온라인 인증체계가 보안토큰기반의 공인인증서로만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보안토큰기반의 공인인증서와 함께 Call-Back(핸드폰 소유주 명의 확인 등)을 통한 본인 확인 또는 기 발급된 OTP(One Time Password), 기타 인터넷전문은행의 자체적인 본인 확인 절차 등 다채널·다각도의 인증과정을 거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온라인을 통한 다채널 인증과정이 대면을 통해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보다 사고의 개연성이 높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신분증 위조를 통한 금융사고도 빈발<sup>23)</sup>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기술정책이 전자금융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투명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장기적인 금융부문의 보안체계 구축 방향 마련과 함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온라인계좌개설이 금융실명법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타인명의의 계좌(대포통장)를 이용

하여 각종 범죄에 결재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정보 비밀보장을 위해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보호의무와 위반시 처벌을 부과하고 있으나, 사이버 범죄에 자주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통장’ 개설자에 대해서는 현행법 상 처벌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 7월 ‘금융거래계좌 양도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 재경위 금융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법률의 조속한 입법이 선결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법안의 입법과 함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 초기에 온라인개설계좌에 대한 예금액, 개설 계좌 수 등을 일정부분 제한하거나 금융거래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 보고 기준<sup>24)</sup>을 강화 하는 등 이상 금융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금융거래의 건전성과 투명성(자금세탁방지)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명확하고 세분화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여 투명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로, 산업자본의 유입에 따라 이(異)업종간(설립주체가 되는 비은행권과 자은행인 인터넷전문은행간) 고객정보의 편법적인 이용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모회사와의 관계 등에 있어서 고객정보를 임의로 활용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와 정보의 제공범위에

- 21) HSM(Hardware Security Module) 전자서명 알고리즘 생성 키 등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및 보관하기 위해 키 생성과 전자서명 생성 등이 기기내부에서 처리되도록 구현된 하드웨어(HW)기기로서 물리적 보안 및 암호연산 기능을 내장해 키보드 해킹이나 피싱으로부터 공인인증서 유출을 방지하는 장치
- 22) 2007년 11월 KISA(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는 보안토큰 기반의 공인인증서 이용 규격(V1.7-표준화)을 발표하였고, “구현적합성 검증 평가 인증”을 실시하고 있음.(’08. 4 현재 3개 업체 제품 인증)
- 23) 2001년부터 2003. 1월까지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신분증 위조 금융사고는 총 36건  
<신분증 위조 금융사고 유형별 건수>

대출사기*	신용카드 부정발급	예금(예탁금) 부당인출	계좌개설 후 타범죄 이용	기타	합계
18	9	3	3	3	36

\*부동산 담보대출사기 6건, 약관(예금)담보대출사기 6건, 신용대출사기 6건(자료출처 : : 금융감독원)

- 24) 동일 금융기관에서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일 5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시 그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 의무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기업들에게 있어서 고객정보의 보호보다는 정보의 효과적인 활용이 우선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편법적인 고객정보의 이용과 고객정보 관리 소홀로 인한 정보유출을 자행한 기업에 대한 제재가 고작 가벼운 과징금에 그치고 있는 것도 기업이 고객정보보호에 소홀하게 된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금융권의 고객정보는 개인 생활과 밀접하고, 유출시 파급영향이 크며, 2차 피해우려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남다르다. 이러한 점에서 효과적인 고객정보보호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과 설립주체가 되는 모회사에게 엄격하게 책임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최근 고객도 자신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있는 시점으로 고객정보는 단기적인 마케팅 관점에서보다는 고객정보보호를 통한 장기적인 수익창출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은행업 경험 부족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설립초기에 일정기간 동안 임직원의 일정비율을 금융업에 숙련된 인력으로 구성토록 제도화하거나, 구성 임직원의 경력을 대외공시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모회사로부터 자은행 경영진의 독립성과 모회사에 은행업무 위탁, 직원점직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차단대책이나 점검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으로 금융거래 서비스가 집중됨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 대한 보다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안시스템에 많은 자원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자원의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IT기술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전문인원(CTO, CSO) 영입, 전문인력의 확보 등 조직 운영상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인터넷전문은행 자체적으로도 해당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 수립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장애 또는 재해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업무 연속성 및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상영업계획, 백업센터 구축을 포함한 재해복구계획을 철저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인가 심사시 이러한 리스크에 대하여 대응이 가능한 실질적인 대책 수립 여부와 상시 가동 가능토록 점검 여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미국,

일본 등과 같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안정성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독립적인 검토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방안과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기술적으로는 기존은행과 유사하게 시스템 다중화를 통한 안정성도 확보해야 하지만, 외부장애요인에 대한 전체업무의 마비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장애시 전환하여 수용이 가능한 온라인 금융거래 채널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뱅킹을 통한 금융거래 장애시 폰뱅킹을 통한 금융거래로 전환할 수 있도록, 비상시 서비스제공기관(회선제공업자)으로부터 충분한 시스템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하는 소액 금융소비자의 불편사항이나 문의사항 등 고객의 고충에 대한 원활한 해소를 위해서는 영업인가시, 콜센터(Call center) 등 이용자와의 의사소통 채널이 되는 충분한 시설을 유지토록 해야 한다. 또한, 전자금융업무의 기반이 되는 전산시설이나 필요한 경우, 대면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영업점 등 물리적인 실체를 국내에 유지토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비상시 금융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채널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소비자보호를 위한 충분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만 기존 은행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익성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로, 인터넷전문은행이 비용절감을 위해 추구하는 철저한 아웃소싱은 인터넷전문은행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으로 보인다. 미국(OCC)에서는 외부 아웃소싱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은행의 영업 전략과 부합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아웃소싱업체는 감독당국의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토록 하는 등 구체적인 리스크 관리준칙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금융기관에 대하여 아웃소싱에 따른 IT리스크에 대한 가이드를 마련하여 준수토록 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일관된 감독기준 제시가 미흡한 편이다. 기존 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간의 영업규모 및 영업환경과 추진전략 등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국제기준에도 부합하는 체계적인 아웃소싱 리스크 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요 전자금융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을 요약하면 [표 8]과 같다.

[표 8]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요 전자금융리스크 대응방안 요약

리스크 분야	대응 방안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계좌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안토큰 기반의 공인인증서와 다채널 본인인증 체계 수립</li> <li>- '금융거래계좌 양도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조속 입법</li> <li>- 자금세탁 등 이상 금융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강화</li> </ul>
이(異)업종간 편법적 고객정보 이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제공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li> <li>- 인터넷전문은행 및 모기업에 대한 고객정보보호 책임 강화와 고객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전환 유도</li> <li>- 인터넷전문은행 구성 임직원 일정비용을 금융업 숙련인력으로 구성토록 제도화 또는 임직원 경력 대외 공시 방안 등 수립</li> <li>- 모회사로부터 자은행 경영진의 독립성과 모회사에 업무위탁, 직원겸직 등을 금지하는 제도적인 차단체 책임이나 점검방안 마련</li> </ul>
인터넷채널에 대한 높은 업무의존성 및 IT기술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채널에 대한 보안시스템 강화</li> <li>- 기술전문임원(CTO, CSO) 및 전문 인력 확보 등 조직 운영상 대책 수립</li> <li>- 인터넷전문은행 자체적인 보안 및 기술변화 리스크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li> <li>- 안정성 대한 실질적 대책 수립여부 점검 등 리스크 관리·감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재해에 대비한 철저한 비상영업계획 및 백업센터 구축</li> <li>·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독립적인 검토보고서 정기적 제출 및 경영진 책임 강화</li> <li>· 장애시 전환수용 가능한 온라인 금융거래 채널 확보방안 마련 등</li> </ul> </li> </ul>
이용자와 의사소통채널 부재에 따른 고객보호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콜센터 등 이용자와의 의사소통 채널이 되는 시설을 충분히 유지토록 의무 부과</li> <li>- 전산시설 또는 영업을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 실체를 국내 유지토록 의무 부과</li> <li>- 비상시 금융소비자와의 서비스 전달채널 확보</li> </ul>
철저한 아웃소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규모, 영업환경 및 추진전략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아웃소싱 리스크 관리기준 마련</li> </ul>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는 금융자유화를 진전시켜 금융거래가 자유경쟁원리에 입각해 이루어짐에 따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바람직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과도한 리스크에 노출 될 경우에는 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역 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야기 시키는 등 여러 가지의 폐해를 줄 수도 있다. 우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이러한 빈틈을 차단 해야 한다. 특히, 금융이용자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유한 특성으로 수반 되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해야 한다. 또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VI.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인터넷전문은행은 역사가 짧고, 규모가 작아 안전성 면에서 아직 많은 문제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는 컴퓨터 시스템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웹서버, 인터넷망 등 일부 시스템의 장애로도 업무 자체가 마비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금융소비자가 은행을 선택

하는 요인에는 편리성, 예금이자율, 안정성 등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안전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다. 모든 종류의 은행이 이런 위험을 갖고 있으나,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그 위험도는 심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인터넷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금융이용자가 신속하고 편리한 전자금융거래를 선호하고 있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국내에서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벤처적 특성을 인정받기 보다는 은행으로서의 기본적인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전문은행이 실질적으로 다수의 금융이용자에게 다양한 혜택과 효율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초기 사업계획 심사 단계에서부터 새롭게 발생되거나 그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는 전자금융리스크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예상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구체적인 인가요건이 마련되지 못한 현 상황에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에 발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진행 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1] 강임호,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에 관한 연구, 한국 금융연구원, 2003.
- [2] 김태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 [3] 김창호, 인터넷 專門銀行의 設立展望 및 課題, 한국은행 금융시스템 리뷰, 2005.
- [4]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정보, 2002.
- [5]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전자금융업무 감독규정 해설, 2001.
- [6]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거래 및 감독정책, 금융감독원 인력개발실, 2005.
- [7] 남혜정, 인터넷전문은행과 다채널 은행의 비교, eFinance Research Group, 2001.
- [8] 이강식,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리스크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숭실대 석사학위 논문, 2006.
- [9] 유극렬, “인터넷진입과 생산비용”, 한국재무학회, 재무연구 제15권 제2호, 2002.
- [10] 정운성, 인터넷전문은행의 현황과 전망, 금융결제원, 2006.
- [11] FDIC Banking Review, Limited-Purpose Banks : Their Specialties, Performance, and Prospects, 2005.
- [12]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A Guideline Issued by the Monetary Authority Under Section 16 of the Banking Ordinance, 2000.
- [13]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 Policy Statement on Internet Banking, 2000.
- [14]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The Internet and the National Charter, 2000.
- [15] Risk Management Principles for Electronic Banking,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2003.
- [16] Robert DeYoung, Robert, Learning by Doing, Scale Efficiencies and Financial Performance at Internet-Only Banks, Federal Reserve Bank of Chicago, Working Paper, 2001.
- [17] Robert DeYoung,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Pure Play Internet Banks, Federal Reserve Bank of Chicago, 2001.
- [18] Vincent Mak, Japanese First Internet-Only Bank

: A Teaching Case, University of Hong Kong, 2002.

## 참고사이트

- [1] 금융감독원 : <http://www.fss.or.kr>
- [2] 금융결제원 : <http://www.kdic.or.kr>
- [3] 미국 OCC Electronic Banking Guidance : <http://www.occ.treas.gov/netbank>
- [4] 싱가포르 통화감독청 : <http://www.mas.gov.sg>
- [5] 일본 금융감독청 : <http://www.fsa.go.jp/en>
- [6] 한국은행 : <http://www.bok.or.kr>
- [7] 홍콩 금융감독청 : <http://www.info.gov.hk/hkma/eng/bank>

## <著者紹介>

### 김 태 호 (Tae-Ho Kim)

1995년 2월 : 광운대학교 전자계산학과  
 2007년~현재 : 고려대학교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금융감독원 선임 조사역  
 <관심분야> 정보보호정책, 금융정보보호, 금융IT정보화, 시스템관리



### 박 태 형 (Tae-Hyoung Park)

2004년 2월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2008년 2월 : 고려대학교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 박사수료  
 <관심분야> 정보보호정책, 개인정보보호, 디지털 포렌식, 방송통신융합 정보보호, 국가정보화



### 임 중 인 (Jong-In Lim)

1980년 2월 : 고려대학교 수학과  
 1982년 2월 : 고려대학교 수학과 석사  
 1986년 2월 : 고려대학교 수학과 박사  
 현재 : 고려대학교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 원장, 고려대학교 정보보호기술연구센터 센터장  
 <관심분야> 정보법학, 디지털 포렌식, 개인정보보호, 전자정보보안

